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1. 서류심사

구 분	합계	성적 및 교육사항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 및 가점
기간제근로자	100	30	10	60	장애인 : 5점 취업지원대상 : 5-10점

2. 면접시험

구 분	합계	전문성/역량	인성/태도	우대 및 가점
기간제근로자	100	50	50	장애인 : 5점 취업지원대상 : 5-10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3. 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표

구 분	일 반 자 격	배 점
기간제 근로자	정보처리/워드프로세서/세무회계/전산세무/전산회계/기업회계/ 컴퓨터활용능력/교통/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	1급 : 2점 2급 : 1점 기사 : 3점 산업기사 : 1점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어능력시험(KBS)	1급 : 2점 2급 : 1점

- *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하며, 동일분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 * 자격등급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해당자격의 하위등급으로 판단단,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단일등급은 1급으로 평가
- *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행된 자격만 인정

4. 직무수행계획서 채점기준 *위촉연구원

평가기준	배 점	채 점 기 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해당분야 응시적정성	30	30	24	18	12	6
해당업무 비전제시 능력	30	30	24	18	12	6

5. 자기소개서 채점기준 *청년인턴/실무원

평가기준	배 점		채 점 기 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	성과도출	(10)	10	8	6	4	2
	자기주도	(10)	10	8	6	4	2
어려움 극복과 성과 도출 경험	성과도출	(10)	10	8	6	4	2
	자기주도	(10)	10	8	6	4	2
공단 지원 동기와 비전	성과도출	(10)	10	8	6	4	2
	자기주도	(10)	10	8	6	4	2

6. 성적 및 교육사항 반영기준

구분	점수 부여 기준	비고
학교교육	직무 관련 전공과목 이수학점 당 2점	사외교육은 이수시간이 명시된 수료증 발급 교육에 한하여 인정
사외교육	직무 관련 교육 10시간 당 1점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 과정은 단위수 당 2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업무처리세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채용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정상적인 채용전형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입사지원 관련 항목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병역사항, 장애 및 보훈사항, 자격증 및 어학취득사항, 근무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입사지원서 및 임용포기서(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입사지원 정보 확보, 지원자 문의 응대, 지원자 식별, 전형결과 및 채용 변경사항 등
- 보존항목 : 입사지원서류 일체
- 보존근거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동안 보존,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성명 : _____ (서명)

[제 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공단은 지원자가 제출한 정보의 검증에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 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경찰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입력정보의 진위여부 파악
 -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즉시 파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성명 : _____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 결격사유 동의]

- ① 피성년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⑦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⑩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⑪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⑫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⑬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상기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성명 : _____ (서명)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사규정」 상 채용결격여부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질문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후 회신해주시기 바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취소 또는 해임요구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피성년후견인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
- 3-1.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3-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3-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3-4.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3-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 3-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해당여부**(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해당 / 해당없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is.police.go.kr)에서 개인의 범죄, 수사경력을 본인열람하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하여 판단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5.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6.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7.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하는지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 기재사항은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자료로만 활용됩니다(이외 용도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원분야 :

지원자 성명 :

(서명)

공정채용확인서

소 속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자	
성 명			

상기 본인은 채용업무처리세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 붙임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반 근무수칙을 준수한다.
4. 공단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다.
5. 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약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임용포기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포기사유

20 년 월 일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